

의안검토보고서

1. 발의 또는 제출자 : 김인식 의원의 7인
2. 건 명 : 대전광역시 올림피아기념 국민생활관
관리·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
3. 안 건 요 지 : 별 첨
4. 검 토 의 견 : 별 첨

위 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별첨과 같이 보고합니다.

2007년 9월 12일

행정자치위원회

전문위원 이희배

대전광역시 올림픽기념 국민생활관 관리·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

본 조례 안은 2007년 8월 31일 김인식 의원외 7인의 의원으로 부터 발의되어 2007년 8월 31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음

1. 제안이유

스포츠 여가활동의 대중화와 건강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여성의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한편, 나아가 여성의 복지 및 권익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대전광역시 올림픽기념 국민생활관의 수영장 시설 이용 여성에 대하여 생리기간만큼 수영장 사용료를 감면 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사용료 등의 감면조항에 여성 수영회원 중 15세 이상 49세 이하의 가임기 여성과 생리를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또는 소견서를 제출하여 할인을 받고자 하는 여성을 포함하도록 관련 규정을 신설함(안 제10조제2항제10호).

나. 여성 수영회원 중 생리를 하는 여성에 대하여 월 이용료의 100분의 10을 경감하도록 규정함(안 제10조제3항).

3. 검토의견

○ 본 개정 조례 안은

여성의 건강복지 및 권익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생리가 진행 중인 여성회원에게 수영장 이용료의 일정비율을 감면해 주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나,

공공 수영장이 아닌 일반 수영장에 대하여도 이용료 감면을 시행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강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.